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(김태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89

발의연월일: 2020. 9. 11.

발 의 자 : 김태흠 · 김도읍 · 홍문표

최승재 · 서일준 · 유의동

성일종 • 구자근 • 이종배

김용판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로서 관할 지 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을 통해 순찰활동, 범죄신고 및 청소년 선 도 등을 담당하며 범죄예방 활동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.

이와 같은 자율방범대의 자율방범활동은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며 지역 치안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, 위험과 희생이 따르는 업무의 특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자율방범대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.

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방 범대와 관련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·범죄예방·청소년선도 등의 자율방범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함(안 제1조).
- 나. 자율방범대를 설치·운영하려는 사람은 명칭, 활동구역 등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(안 제4 조).
- 다. 미성년자, 성폭력범죄자, 이 법에 따른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및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등과 관련한 자율방범대원의 추천·위촉 제한사유를 규정함(안 제5조).
- 라.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경찰서장이 위촉하도록 함(안 제7조).
- 마.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범대연합회를 설립하고, 방범에 관 한 정책 건의 및 자문, 자율방범대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 항을 담당하도록 함(안 제12조 및 제13조).
- 바. 자율방범대와 전국연합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(안 제14조).
- 사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전국연합회

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확보, 복장·장비의 구입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).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·범죄예방·청소년선도 등의 자율방범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자율방범대"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방범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 - 2. "자율방범대원"이란 자율방범대의 구성원으로 경찰서장이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.
 - 3. "자율방범대장"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설치·운영 단위) 자율방범대는 「경찰법」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별로 인구·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.
- 제4조(설치 등의 신고) ① 자율방범대를 설치·운영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

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1. 명칭
- 2. 활동구역
- 3. 대표자의 성명
- 4. 구성원(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을 말한다)의 성명,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자율방범대장은 설치·운영 중인 자율방범대를 해산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.
- 제5조(자율방범대원의 추천·위촉 제한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으로 추천·위촉될 수 없다.
 - 1.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
 - 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집행이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

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제14조에 따른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·고용 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
- ②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제한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.

제6조(자율방범활동) 자율방범대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.

- 1.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
- 2. 청소년 선도 및 보호
- 3. 경찰서장·지구대장·파출소장(이하 "경찰서장등"이라 한다)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- 4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읍장·면장·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- 제7조(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) ① 경찰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

제한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-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사람은 해촉하여야 한다.
-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.
- ④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복장 및 장비)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활동 시 자율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
 - ② 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(塗裝)이나 표지(標識)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순찰차량을 운전하여서 는 아니 된다.
 - ③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명 및 복장·장비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교육·훈련) 경찰서장등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읍장· 면장·동장은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을 실시할 수 있다.

- 제10조(지도) 경찰서장등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읍장·면 장·동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효과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그 활동을 지도할 수 있다.
- 제11조(포상) 경찰청장,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읍장·면장·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수 있다.
- 제12조(전국자율방범대연합회의 설립)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 방범대연합회(이하 "전국연합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 - ② 전국연합회를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.
 - ③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전국연합회의 업무)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방범에 관한 정책 건의 및 자문
 - 2. 자율방범대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
 - 3.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
 - 4. 자율방범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- 제14조(정치활동 금지의무) 자율방범대와 전국연합회는 그 명의 또는

-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(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5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또는 전국연합회가 아니면 자율방범대, 전국자율방범대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6조(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 와 전국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확보, 복장·장비의 구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
 -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 율방범대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벌칙) 제14조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「공직선거법」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.
- 제18조(과태료) ① 제15조를 위반하여 자율방범대, 전국자율방범대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 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율방범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자율방범대로 본다. 다만,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.